



※ 작성방법

- 1. 제조·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판매실적보고서는 제조·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- 2. ⑧해양심층수 구분: 국내산·수입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3. ⑨판매방법: 통상거래에 의한 판매는 통상판매란에,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적습니다.
- 4. ⑩용량·용기규격별: 제품의 용량 및 용기규격별로 구분하여 적되,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